

여비지급규정

[1989년 5월 8일 제정]
변경 1992. 3. 4. 의결
변경 2004. 5. 21. 의결
변경 2008. 10. 28. 의결
전개 2023. 6. 13. 의결
변경 2025. 6. 10. 의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의 임원 및 직원 등이 회무수행상 출장에 소요될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장비의 지급기준)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3조 (출장명령과 품의)

- ① 협회장은 회무수행상 출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회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한다.
- ② 출장은 국내 및 국외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조에 정한 여비기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등 지급) 출장여비에는 실비운임 및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지방회원에 대한 여비지급) 이 회의 회무수행상 필요로 인하여 지방회원이 이 회 또는 서울등지에 출장한 때에는 [별표2] 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출장보고서) 제3조에 의하여 출장을 마친 임원과 직원은 출장완료후 3일내에 출장보고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장여비 등의 정산) ① 출장자가 출장명령 일수보다 초과하여 출장임무를 마쳤거나 출장지의 변경 등으로 출장여비의 지급액보다 초과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출장여비초과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협회장은 출장보고서를 검토한 후 출장여비의 정산지급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1992. 3.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있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변경 2004. 5.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08. 10.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23. 6.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25. 6.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변경 2004.5.21., 2008.10.28., 2023.6.13., 2025.6.10.>

구 분	임 원	직 원			
		1급	2급	기타 사무직	기능직
항공운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철도운임	고속철도 다만, 고속철도 미운행지역은 새마을 또는 고속버스	고속철도 다만, 고속철도 미운행지역은 새마을 또는 고속버스	고속철도 다만, 고속철도 미운행지역은 새마을 또는 고속버스	고속철도 다만, 고속철도 미운행지역은 새마을 또는 고속버스	고속철도 다만, 고속철도 미운행지역은 새마을 또는 고속버스
선박운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자동차운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1회 식비	15,000원	12,000원	12,000원	12,000원	12,000원
1일 숙박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일 당	150,000원	120,000원	110,000원	100,000원	100,000원

[별표2] <변경 2004.5.21., 2008.10.28., 2023.6.13.>

항 공 운 임	실 비
철 도 운 임	고 속 철 도 다만, 고속철도 미운행지역은 새마을 또는 고속버스
선 박 운 임	실 비
자 동 차 운 임	실 비
1 회 식 비	15,000원
1 일 숙 박 비	실 비
일 당	150,000원